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포함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81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개요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7.
3. 회부연월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인의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인사법」 제46조의6에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으로 자기개발 활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u>취득하는데</u>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 ----- <u>취득</u> <u>하고 자기개발활동을 하는데</u> -----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기개발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자기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¹⁾.

1) 「군인사법」 제46조의6(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 반면, 공무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²⁾.
- 이에 개정안은 군인의 자기개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인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여 군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그 시행령은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승진임용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시간에 자기개발 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는 승진요건과 연계된 자기개발 학습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개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 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기개발계획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기준시간 달성도 등에 관한 성과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지도사 및 수석전문관·전문관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승진임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에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등을 직렬별·직급별 또는 그 밖의 적정 기준에 따른 구분단위별로 달리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1. 목 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시간(이하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3)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이하 “교육훈련기준시간”이라 한다.)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 단위로 설정함

(4)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은 각 부처의 직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소속 직원의 역량개발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군인의 복무여건을 고려했을 때,

- ① 순수한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경우에는 공무원 등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② 공무원과 유사하게 자기개발을 승진 요건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군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군인의 자기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병(兵)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학습 단절 극복과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해 병 자기개발비용을 자체 지원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업 역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자체 추진 가능한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 지원 대상이 ‘직무 창의성 및 전문성 향상’으로 한정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낮은 병의 자기개발활동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 자기개발활동 지원 대상이 장교·부사관 등 간부로만 한정될 우려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참고자료: 공무원 상시학습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지식기반·평생학습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직사회를 학습조직화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제고
- '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학습을 승진 요건화

□ 추진경과

-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06.7.21)
- 상시학습 시범운영('06.4~12), 운영지침 제정('06.9), 본격 시행('07.1)
 - * 지방공무원 도입('08.1, 2급 이하 적용. '11년부터 80시간 이상)

□ 주요내용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도입
 - 4급이하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10년까지는 60시간 이상)
 - * 기관장이 업무특성 등 감안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 가능. 기능직의 경우 부처별 자체기준 설정 운영
-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 직무관련 개인연구·학습활동 및 T/F 참여, 정책현장 방문 등 업무현장의 학습활동까지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
- 과장급 부서장에 대해 소속직원 교육훈련 관리책임 부여(성과계약 반영)
- 공무원 개인의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의무 부여(부서장의 확인 및 실적관리 의무)
- 부처 교육훈련 자율성 확대
 - 교육훈련 인정범위, 이수기준 시간 등 부처 자율 설정
 - 핵심역량 중심의 '부처지정학습'을 설정하여 40%이상 이수 의무화

□ 기대효과

- 정부조직의 학습조직화 촉진 및 현장학습 활성화
-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 촉진
 - * 1인당학습 : 40시간('05)→86시간('06)→114시간('07)→125시간('08)→121('09)→114('10)

자료: 인사혁신처